

노동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법안

(김형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34
----------	-------

발의연월일 : 2025. 8. 19.

발 의 자 : 김형동 · 김소희 · 우재준
한지아 · 박상웅 · 박정하
박형수 · 서명옥 · 고동진
조지연 의원(10인)

제안이유

개별적·집단적인 노동분쟁 해결은 전통적 권리구제기관인 법원의 재판, 노동위원회의 심판·조정 등 공적 분쟁해결 시스템에 의존하여 왔으나, 집단적 노동분쟁 대비 개별노동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분쟁의 내용 및 유형이 복잡·다양화되는 노동환경에서 그러한 공적 분쟁해결 시스템만으로는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런데 화해·조정 등 분쟁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분쟁 해결방식은 처리기간의 단축 및 비용 절감, 결과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보장 및 다양한 분쟁 해결 방식 활용에 따른 만족도 제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미국과 독일, 일본 등은 노동분쟁에 있어 민간의 자율적 분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들을 정비해오고 있음.

이에 노동분쟁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자율적 분쟁 해결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과 노동관계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노동분쟁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자율적 분쟁해결에 필요한 사항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분쟁이 신속·공정하고 자주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노동관계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노동분쟁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상담, 화해, 조정, 중재 등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로,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위하여 조력을 제공하는 자를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지원함(안 제6조).

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의 분쟁 해결 활동, 홍보, 정보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지원인 교육, 명부 등재·공표, 활동 지원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마.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에게 독립·공정한 업무 수행 의무와 함께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등을 부여하

는 한편,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분쟁 당사자들이 수수료, 조사비, 여비 등 분쟁 해결 소요 비용을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가 사회취약계층 및 영세사업장을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노동분쟁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등을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 절차를 안내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의 조정 등을 통한 해결을 당사자들이 수락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심판 등 절차를 통한 노동분쟁 당사자들 사이의 조정 등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안 제12조).

노동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별적·집단적 노동분쟁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자율적 분쟁해결에 필요한 사항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분쟁이 신속·공정하고 자주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분쟁”이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한 일체의 개별적·집단적 분쟁을 말한다.
2.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이란 법원에 의한 재판이나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의한 심판 등 사법·행정형 권리구제 방식 이외에 노동분쟁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상담·화해·조정·중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3.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이란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력을 제공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명부에 등재·공표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노동분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그 성질상 자율적 해결에 적합하지 않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조사·교육·홍보·정보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서의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 절차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책무 이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지원 등)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노동분쟁해결 지원인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이하 “지원인교육”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원인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노동분쟁해결 지원인 명부 등재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

준 자는 성명, 사무소 소재지, 지원인교육 이수 및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위원장에게 노동분쟁해결 지원인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1. 지원인교육을 이수한 자

2. 노동관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위원장은 3년마다 제1항에 따라 신청·등재된 명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여 노동분쟁 당사자들의 노동분쟁해결 지원인 선정을 위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③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은 공표된 명부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된 경우 등에는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부 등재를 반려 또는 철회하거나 지원인 명부를 수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명부 등재 및 공표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사항이 확인된 경우

2.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이 제9조에 따른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장은 명부 등재 및 공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이 되려고 하는 자 또는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명부 등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노동분쟁해결 지원인 활동 등 지원) ① 위원장은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이를 통한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장려하기 위하여 분쟁해결 활동 및 홍보, 정보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③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법에 따른 지원인교육, 명부 등재 및 공표, 활동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제9조(노동분쟁해결 지원인의 책무 등) ①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은 노동분쟁 당사자로부터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엄수 의무) 노동분쟁 당사자 및 노동분쟁해결 지원인 등 노동분쟁의 자율 해결에 관여하였던 사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차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비용 등 부담) ①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은 노동분쟁 당사자들로 부터 수수료, 조사비 및 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합의가 없으면 노동분쟁 당사자들은 해당 비용 등을 각자 부담한다.

② 국가는 사회취약계층 및 영세사업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에 대한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방식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의 특례) 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판정·결정·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구제·시정신청 사건(이하 “구제·시정신청 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 절차에 관하여 안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노동분쟁 당사자들이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구제·시정신청 사건에서의 심판 등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중단된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③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의 조정 등을 통한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노동분쟁 당사자들이 수락한 경우에는 노동분쟁 당사자들 사이

에 조정 등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의 조정 등의 대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위원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과 관련된 관리·운영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 기관 또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 ① 제10조를 위반한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